
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

2023. 12.

과업내용서

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함)와 과업수행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라 함)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CleanSYS(굴뚝)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 1 조(목적)

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(70톤/일×2기)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를 통하여 24시간 상시감시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의 주기적인 유지보수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.

제 2 조(적용법규)

-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(측정기기의 부착 등)
-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(측정기기의 운영·관리 등)
-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[별표 10](측정기기의 운영·관리 기준)

제 3 조(용역범위)

용역범위는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 유지보수를 범위로 한다.

1.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 설치현황

구 분	측정항목 및 사양	제조사	비고
CleanSYS [굴뚝 2기]	DUST : 0 ~ 50 mg/Sm ³	다산에스엠 (DIAS-5000DS)	한국환경공단 전 송
	NO : 0 ~ 200 ppm CO : 0 ~ 100 ppm O ₂ : 0 ~ 25 % CO ₂ : 0 ~ 25 %	HORIBA (ENDA-5000 Series)	
	HCl : 0 ~ 50 ppm	시리우스 (SLS 5)	
	유 속 : 0.1m/s ~ 40m/s 온 도 : 0 ~ 300 °C	두일테크 (VOT-03D)	
	자료수집장치(Data Logger)	테크코리아	

2. 점검주기

CleanSYS	정기점검	정밀점검	긴급점검	비고
굴뚝	주 1회	년 1회	발생 시	법정검사 시 상주 (정도검사 등)

※ HCI 측정기기는 별도로 년 1회 정밀점검(HCI Sensor Overhaul 포함) 실시

3. 점검인원

2인 이상(초급기술자 1인 이상, 중급기술자 1인 이상)이 수행한다.

4. 점검방법

구분	점검방법	비고
정기점검	- 각 항목별 측정기기 교정과 기기작동 상태 점검 및 조치 - 한국환경공단 Remote Check 실시(월 1회 이상)	법정검사 시 상주 (정도검사 등)
정밀점검	-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 준한 측정기기 점검 및 조치 (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)	
긴급점검	- 기기 오동작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(주·야·휴일 점검요청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)	

제 4 조(용역 수행 기준)

1.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.
2.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“발주자”와 협의하여 결정·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에서 부담한다.
3.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서 내용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있어 “발주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4.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도검사 및 기타 법정검사에 적합하도록 장비를 유지·보수 하여야 한다.
5. 유지보수용역 주기(**긴급점검 2시간 이내**)를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기

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.

6.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“발주자”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7. 용역 수행 기간 중 소모품의 교체 및 설비 개선사항(관련법 변경 등) 발생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즉시 “발주자”에게 보고하고 자재 및 제반비용은 "발주자"가 제공한다. (경미한 사항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)

제 5 조(공정보고)

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주기에 따라 유지보수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즉시 “발주자”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“발주자”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발주자”의 의견에 이의가 없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용역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의무)

1. 용역 중 보완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발주자”측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2. 용역 수행 기간 중 법정검사 시행 시 “계약상대자”의 용역범위 내의 원인으로 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에 대한 검사비용을 “계약자”가 부담한다.

제 7 조(계약기간)

1.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‘24.1.1.부터 ‘24.12.31.까지로 한다.

제 8 조(안전관리)

1.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고용인이 용역(교체, 교정, 시운전)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즉각 배상하여야 한다.
2. “계약상대자”는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 9조(근로자관리)

용역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해당자격 기준에 합치하여야 하며, 그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“발주자”의 판단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때 “계약상대자”는 해당 근로자를 해당 자격 기준이 있는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행정조치)

1.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전적으로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2.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1조(용역성과품 제출)

1. “계약상대자”는 굴뚝자동측정기기(CleanSYS)의 정기점검 후 점검기록부(업체양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점검기록부는 반드시 “발주자”의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점검자의 성명을 기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조(대가의 지급)

1. 용역의 대가지불은 “발주자”의 용역결과 검수를 완료한 후 “계약상대자”의 요청에 의해 용역실적(용역총액의 1/12)에 따라 “발주처”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.
2. 긴급점검은 시행 횟수에 따라 대가 지급하며 미시행분에 대하여는 정산하도록 한다.

제 13조(계약해지)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경우와 본 과업내용서 “제 4 조(용역수행기준)”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2. 계약기간 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발생 시 그 즉시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서 명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의 미준수에 따른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